경상북도 도보
www.gb.go.kr

선람	기관(부서)의 장

제6610호 2022년 2월 15일(화)

경 상 북 도

■ 조 례

○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(경상북도 조례 제4651호) ··· 3

회람								

발행인:경상북도지사　편집:대변인실

◈◈

경 상 북 도

조 례

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

2022년 2월 15일

경상북도 조례 제4651호

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신종감염병”이란 법 제2조제2호타목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.

6. “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지원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진료비 지원) 도지사가 인정하는 신종감염병에 대해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감염병환자 등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새바람 행복 경북!

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韓세상